

## 2020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

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5월 4일  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**(지원규모)** 40업체

**(지원대상)** 충청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상 2019. 11. 5. 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)

- ❖ 소상공인 기준(업종별 평균매출액<별첨 1>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)
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
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및 서비스업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

#### < 지원 제외 대상 >

- ✓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유흥, 사치향락 및 투기업종(별첨 2)
- ✓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✓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✓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
- ✓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✓ 전년도(2019)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
- 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(단, 본인 직장에 가입자한 자는 지원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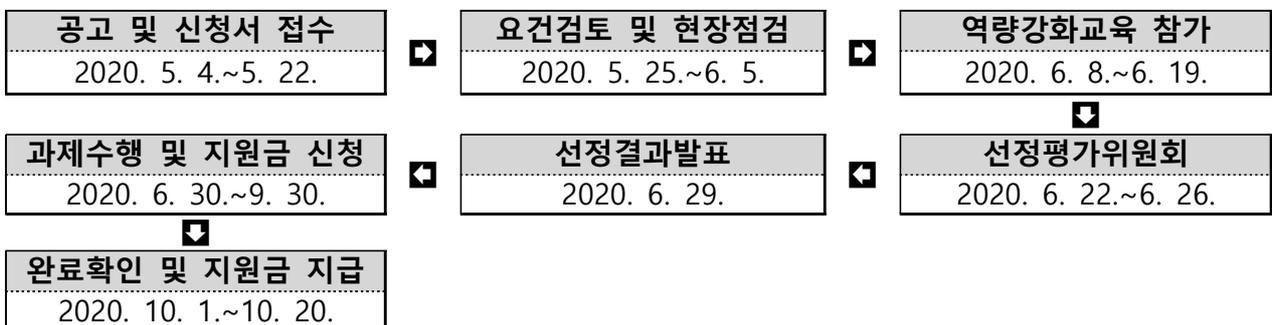
## 2. 지원내용

**(지원금액)** 광고홍보 및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,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본인 부담)

**(지원분야)** 아래의 단위사업 중 선택하여 지원(단위사업은 1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하며, 선택한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복수 선택 가능)

단위사업	세부 지원 내용
홍보 및 광고	- 홍보물(전단지, 리플렛, 카탈로그, 판촉물 등)
	- 제품포장(포장용기, 쇼핑팩 등) ※ 기업명 기재
	- 홍보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(모바일 앱 포함)
	-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점포환경개선	- 옥외간판 교체
	- 내부 인테리어(도배, 조명, 어닝, 셔터, 닥트공사, 바닥공사 등)
	- 시설집기류 교체(레이아웃용 진열대, 전시대, 입식 테이블 세트에 한함)
	- CCTV, POS 시스템, 신분증 감별기 신규 구매 및 설비
	- 소방·위험물(가스, 전기 등) 점검 및 교체, 소독·청소용역(코로나19 관련 방역)

## 3. 추진일정



※ 현장점검 미 참여업체는 선정평가에서 제외

## 4. 신청 · 접수

**(신청기간)** 2020. 5. 4.(월) ~ 5. 22.(금) 18:00까지

**(제출서류)**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cepa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- ①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[서식 1]
- ② 사업자 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사본 1부
- ③ 매출액 증명서류(발급처: 세무서, 국세청 홈페이지(홈텍스))  
**(과세사업자)*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  
**(면세사업자)**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- ④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 
**(상시 근로자 가 있는 경우)**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
(발급처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)  
**(상시 근로자 가 없는 경우)**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
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www.nhis.or.kr)
-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[서식 2]
-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(국세 납세 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불인정)
- ⑦ 견적서(사양, 규격, 수량, 가격 등이 명시되어야 함) 및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⑧ 옥외광고등록증(간판·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)
- ⑨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[서식 6](신고/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)
- ⑩ 우대조건 확인서류(충남도 소상공인 역량교육 수료자<2019년>, 제로페이 가맹 확인서)

**(접수방법)** 이메일, 우편 및 방문접수

- 이메일 접수: sbizcenter@naver.com(파일명: 업체명\_대표자명)
  - ※ 파일명 예시: 행복가게\_홍길동
  - ※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
- 우편접수: (31450)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
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
- 방문접수: 충청남도경제진흥원 401호(기업육성팀)

## 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(평가 및 선정)

- (요건검토)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- (현장점검) 사업장 및 제출서류 등 확인
- (대면평가)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의 효과성 등을 평가
  - ※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 시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
- (선정기준) 평가결과(평점 보통 이상) 고득점 순으로 선정(동점일 경우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)
- (평가항목) 정성평가(50점, 추진계획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), 정량평가(50점)
- 충남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(2019년)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수 5점부여(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-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업체 우선 지원(현장점검 시 매출서류 확인)
  - ※ 19년도 4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1분기 평균액 매출 40% 이상 감소 업체

### (선정취소)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-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된 과제 수행기간동안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 (변경 및 포기)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및 수행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[서식기]

- 제작비용이 하향된 경우 지원금은 하향된 비용으로 감액 변경되거나 상향된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
-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
- 지원 포기의 경우 시 포기신청서 제출[서식8]
- 지원포기자는 다음연도 지원 불가

### **(수행업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식)**

- 수행과제와 연관된 '업체'와 '종목'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 업체 선정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
- 점포환경개선의 경우, 수행업체는 충남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,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
- 지원비 지급은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 후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
### **(기타 유의사항)**
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**(문의처)** 충청남도경제진흥원(보부상 콜센터) ☎ 041-424-4000

【별첨 1】

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<b>&lt;비고&gt;</b>		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		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		

【별첨 2】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<del>64992</del>	<del>지주회사</del>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